

중국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 초안 발표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한 정보 관리 기준 강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 보호에 비상

중국어 원문(공식)

영어 번역문(비공식)

1.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초안)’ 개요

글로벌 기업, 영업 기밀 보호차원에서 중국 내 데이터 보관 부담 가중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데이터 제출 요구 가능

중국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초안) 개요

목적 (제 1조)	중국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책임 강화 (2017년 시행된 ‘사이버보안법’ 의 고시 개념)
적용 대상 (제 38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자국/해외 기업 (네트워크 소유자, 네트워크 관리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위반 시 처벌규정 (제 37조)	소득 몰수, 업무 정지, 영업 정지, 인터넷 사이트 폐쇄, 사업 면허 취소, 형사처벌 등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 정부기관 요청 시 보유중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② 데이터 국지화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중요정보*의 국외 전송을 금지함 ③ 중국 정부기관의 보안 인증을 통과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부여 ④ 중국 인터넷 규제 정책을 준수해야 함
시행일	미정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상)

* **중요정보**: 국가 안보, 경제, 사회, 공공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예: 미공개 정부 정보, 광역 인구, 지리 등)로 기업 내부 운영 정보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

2. 주요 내용 요약

중국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초안) 주요 내용 요약	
<p>데이터 수집 (제 7조 ~ 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칙 공개 •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시 묶음 형태로 동의 강요 금지 •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 필요 •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권한 범위에 따라 서비스 차별 금지 • 중요 또는 민감 정보 수집 시, 소재지 관할 사이버 행정기관에 보고 •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과도한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 제한 • 중요 또는 민감 정보 수집 시, 데이터 보안 책임자 지정
<p>데이터 처리 이용 (제 19조 ~ 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조치(식별, 분류, 백업, 암호화) • 회원 탈퇴 시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 조회, 정정, 삭제 등의 권한 보장 • 상업 광고 알림(Targeted Push) 시 이를 표기하고,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거부 시, 디바이스 식별정보 등 삭제 • 빅데이터 또는 AI 기술 등으로 정보(뉴스, 블로그, 답글 등) 생성(합성) 시 이를 표기하고 이익 추구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이용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전송할 시 운영자는 SNS 계정명을 표기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사용자 정보(제작자)를 표기해야 함 • 타인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게시된 정보물에 대해 신고 또는 불만사항을 접수 받게 되면 정보의 전파를 즉시 차단하고, 확인 후 삭제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함 • 중요정보를 공개, 공유, 판매, 또는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관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국 내 이용자가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로 트래픽이 전송 되지 않아야 함 • 제3자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대해 보안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제3자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유출 사고 시 무과실 입증을 제외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합병, 인수, 구조조정 또는 파산 시 인수자가 데이터 보안의 책임과 의무를 이어 받음. 인수자가 없는 경우 데이터를 파기해야 함 • 보유 중인 데이터 자원을 분석 또는 이용하여 시장 예측, 통계, 개인/기업 신용 발표, 국가 안보 위협, 경제 운용, 사회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법적 권리에 손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아야 함
<p>데이터 보안 및 감독 (제 33조 ~ 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기업(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 자발적으로 데이터 보안 관리 인증과 어플리케이션 보안 인증을 통과하도록 장려하고 온라인 검색 엔진, 앱스토어 등에 보안 인증을 통과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표기하고 우선권을 주도록 독려해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분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주체에게 즉시 이를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 해야 함 • 국가 안보, 사회 관리, 경제 통제 등을 위해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주)소만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타워 9층
TEL 02-2636-8300 | FAX 02-2636-8181
Email privacy@somansa.com 제품문의: Sales@somansa.com
copyright (C) 1997-2019 SOMANSA ALL RIGHTS RESERVED.